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
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『관세법』 및 『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』에 따라 『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』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『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』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『관세법』 및 『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』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 및 관세청,
산림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생략

2) 입법예고(2021. 11. 12. ~ 12. 2.)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

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	
연 락 처	(044) 215 - 4462
	(044) 215 - 4467